

(報告)

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규칙안

의안 번호	870
----------	-----

제출년월일 : 1999년 11월 25 일

발 의 자 : 최유석의원 외 19 인

1. 제안이유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항구적인 공신력을 갖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회기의 규격(안 제2조)

- 의회기의 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 깃면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그속에 “議”자 표시
- 하단에 “성남시의회” 표시

나. 의원배지의 규격 (안 제6조)

- 5지의 무궁화 모형가운데 “議”자 표시
- 색상은 금색으로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

성남시의회 규칙 제 호

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議”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城南市議會”자를 궁서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 무궁화 모형과 “議”자, “城南市議會”자는 금색,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에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1/7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양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감사장,상장포함)등
2. 의장이 발행하는 간행물 등
3. 기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의회기는 의사당,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때에는 “대한민국국기에 관한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등) ①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議”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 칠보”를 입힌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는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옷깃에 패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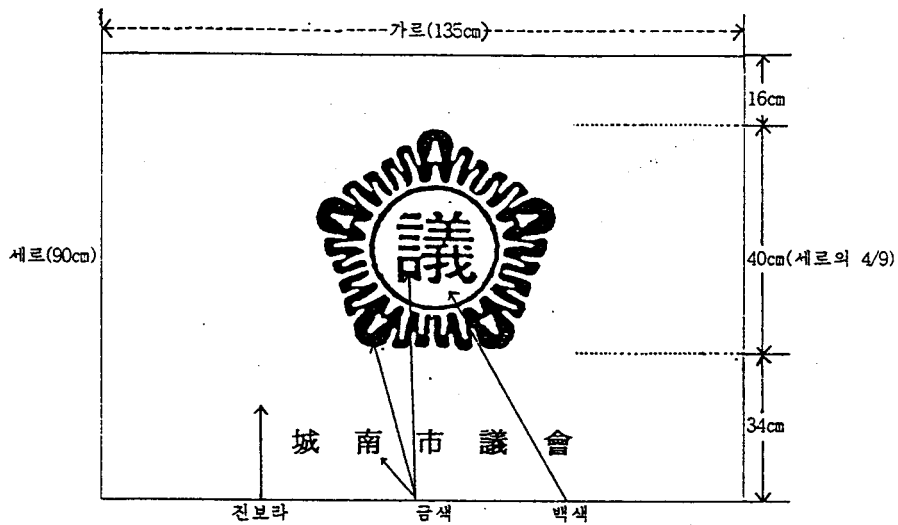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별표 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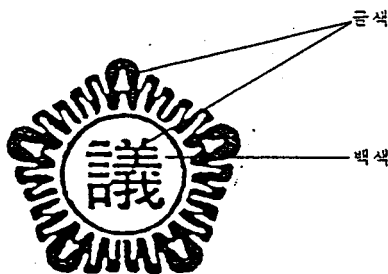
[규 격]

- 깃면의 크기 : 가로 135cm, 세로 90cm(가로:세로=3: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40cm(깃면 세로의 4/9)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직경 : 22cm(무궁화 모형직경의 0.55/1)
 - “議”자의 크기 : 14.6cm (원직경의 2/3)
 - “성남시의회”각 자의 크기 : 10cm (깃면 세로의 1/9)
 - “성남시의회”자 전체의 폭 : 75cm(깃면 가로의 1/1.8)
- ※ 다만 필요에 따라 위 기준에 맞게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표 2)

배지 모형도 및 규격

[모 형]



[규 격]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직경 19mm
무궁화 가운데 원형	의경 11mm 내경 9mm
“議”자의 크기	7mm